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3.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현행 감면조례상 유로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무료노인복지시설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역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의 추징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문을 표준조례와 동일하게 함.(안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나.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던 것을 무료노인복지시설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

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 중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함.(안 제9조제2항)

라.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및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중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관리계획법과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리.(안 제10조의2 및 제16조)

마. 법인 등의 지방이전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군세감면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2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등록"을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등록하여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으로 하고, "동법 제24조 및 제26조"를 "동법 제30조 및 제32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동법 제26조 규정"을 "동법 제3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며,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②---------- ---------- ---------- ---------- ---------- ---------- ----------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단서삭제〉**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며,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 ---------- ---------- ----------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 ---------- ---------- ---------- ---------- ---------- ----------. **〈단서 삭제〉** 1. ~ 4.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생략)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현행과 같음) ② ----------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생략)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 ---------- ---------- ---------- ----------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동법 제30조 및 제32조**---------- ---------- ---------- ---------- ---------- ---------- --------.

현 행	개 정 안
②**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동법 제32조의 규정**---------- ---------- ---------- ---------- ---------- ---------- ---------- ---.
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 ---------- ---------- ---------- ---------- ----------

현 행	개 정 안
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 ---------- ---------- ---------- ----------**2005년 12월 31일**----- ----------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